

제4장 이용계약

제08조(계약기간)

- ①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하며,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
- ②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제09조(계약목적)

-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.
- ②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0조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)

- ① 월 이용료
 - (1) 월 이용료는 [별표 1]과 같으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.
 - (2)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15일 이상 이용할 경우(1일 8시간 이상) 월 120%한도액 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.
- ② 본인부담금
 - (1)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.
 - (2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.
 - (3) 의료급여 수급자,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% 또는 40% 경감한다.
- ③ 그 밖의 비용부담액
 - (1) 비급여 항목(식사재료비, 간식) [별표 1]과 같으며,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(보호자)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 할 수 있다.
 - (2)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(3)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%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 - (4)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대상자인 경우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.
-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 - (1) 권리
 - 1) 이용자의 건강상태,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 - 2)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 - 3)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

- 4)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,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 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(2) 의무

- 1)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
- 2)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
- 3)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
- 4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5)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

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

- (1)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- 1)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- 2)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3) 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
- 4)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(방문요양)
- 5)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- (2)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.

- 가)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나)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- 다)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라)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
- 마)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
- 바)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